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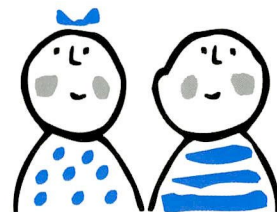
 **사람의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성폭력문제연구소

성폭력에 대해 알아야 할 몇 가지 것들

예 방 과 대 처



 **사람의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에 대해 알아야 할 몇 가지 것들

예 방 과 대 처

기 증

한국성폭력상담소

차례

성폭력이란 무엇인가요? 6

성폭력은 왜 발생할까요? 8

이것은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입니다 10

성폭력에 이런 유형들이 있습니다 13

어린이 성폭력
청소년 성폭력
데이트 성폭력
직장내 성폭력

성폭력 피해자는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17

성폭력 피해자 이렇게 도와주세요 20

심리적 지원
의료적 지원
법률적 지원

이렇게 예방합시다 26

이런 사람은 조심하세요 28

발행일 초판 1998년 8월 8일
재판 2003년 3월 31일
발행인 이 미 결
발행처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성폭력문제연구소
주 소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66-24 2F(121-884)
상담전화 02-338-5801~2
사무전화 02-338-2890~2
팩 스 02-338-7122
홈페이지 www.sisters.or.kr
E-Mail ksvrc@korea.com
글·편집 김지혜, 이경미, 장화정
감 수 이원숙

본 소책자의 저작권은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있습니다.

성폭력이란 무엇인가요?

성폭력은 강간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 음란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불쾌한 언어와 추근거림, 음란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 등 성적으로 가해지는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합니다. 또한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행동제약도 간접적인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성폭력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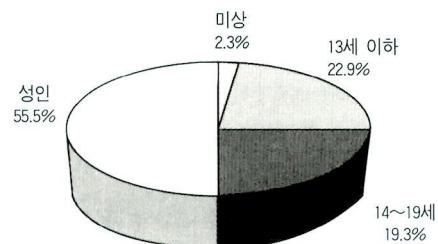
한국성폭력상담소는 1991년 4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총 39,803회의 성폭력 상담을 받았으며, 한 달 평균 400여 회의 상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성폭력 피해자는 신고도, 상담도 하지 않고 혼자서 고민하고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성폭력은 발생건수에 비해 신고율이나 상담률이 극히 낮기 때문에 자칫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남의 일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아직도 성폭력은 숨겨진 범죄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이렇게 만연된 성폭력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성폭력은 힘을 합쳐 함께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자신, 혹은 주변 사람에게 성폭력 피해가 발생했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주변에 신뢰할 수 있는 부모, 친구, 친척 등과 상의하고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성폭력상담소에 전문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피해자의 인격과 의사를 존중하고 비밀을 보장하면서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은 누구에게 일어날까요?

성폭력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일어나고 있으며, 피해자의 절대다수는 여성입니다. 피해자의 연령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별 성폭력 피해자 분포



피해자의 22.9%는 13세 이하의 아동이며, 14세~19세의 청소년은 1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인 피해자가 55.5%로 나타나고 있으며, 2.3%는 연령 미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사용된 통계는 2002년의 상담통계를 기초로 한 것입니다. 본 상담소에 접수된 성폭력 상담의 통계와 분석은 소식지 「나눔터」와 홈페이지(www.sisters.or.kr)에 자세히 실리고 있습니다.



성폭력은 왜 발생할까요?

1. 성차별적인 사회구조

우리 사회는 여성과 어린이를 남성이나 어른에 비해 낮은 존재, 함부로 대해도 되는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직장과 사회에서도 지배와 복종의 위계관계에 놓이게 됨으로써 여성은 남성들의 성적 폭력에 쉽게 노출됩니다. 이러한 성차별적인 사회 분위기는 성폭력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남성에게 성폭력을 허용하게 만들고 나아가 성폭력을 한 경우에도 면죄부를 주게 됩니다.

2. 왜곡된 성문화

한 살이라도 더 어린 여자를 옆에 앉히고 술을 마시려는 남자들, 그것을 부추기는 향락·퇴폐 문화, 건강하고 정상적인 성관계보다는 비정상적이고 변태적인 성행위를 보여주는 음란물, 여성의 가치를 오직 '성'으로 다루는 광고와 영화 등 왜곡된 성문화는 여성을 성적 대상, 성폭력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3. 의사소통의 불일치

우리 사회에서 여성은 성에 무지하고 소극적이어야 하지만, 남성은 적극적이고 과장된 표현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성문화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성에 대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없습니다. 성폭력과 같은 위기상황에서 여성이 "안 된다"라고 의사표현을 해도 남성은 이미 잘못 익힌 성문화에 의해 내성 또는 긍정적 대답의 완곡한 표현으로 받아들여 성폭력을 행하게 됩니다.

4. 성교육의 부재

가정에서는 온 가족이 텔레비전을 보다가 조금만 야한 장면이 나와도 얼굴을 붉히며 쑥스러워하고, 학교에서의 성교육은 남녀의 신체구조나 생

리현상 등 생물학적인 성지식 전달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우리 사회는 성에 대한 가치나 성적 행동에 대해 생각해보는 열린 교육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잡지나 포르노 비디오 등에서 보여주는 과장되고 가학적인 성과 또래 집단에 떠도는 잘못된 성지식을 여과하지 않고 받아들임으로써 이들은 죄의식조차 느끼지 못한 채 성폭력을 행하게 됩니다.

5. 성폭력에 대한 사법계의 인식부족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과정에서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들을 수용하고 있는 형사나 검사는 남성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처리하기 때문에 피해여성은 오히려 자신이 죄인인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자는 고소를 하고 나서 겪는 이중의 고통을 못 이겨 고소를 취하하거나 아예 고소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폭력에 대한 사법계의 인식부족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아예 은폐하거나 법적 과정을 포기하게 되고, 가해자는 또다시 성폭력을 가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것은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입니다

흔히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밤길을 가는 젊은 여성에게 성추동을 느낀 젊은 남성이 그 추동을 이기지 못하여 성폭력을 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성폭력을 당했다고 하면, 여자의 행동이 어떠했기에, 당해도 싸지,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하는 등의 수군거림이 주변에 떠돕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가요? 그러나 이러한 통념은 실제와 많이 다릅니다. 상담소에 접수된 사건들을 토대로 이러한 통념들이 실제와 달리 얼마나 왜곡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1. 성폭력은 낯선 사람에 의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성폭력은 모르는 남성에게 의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는 사람이란 데이트 상대나 애인, 선후배, 직장 동료나 상사, 이웃집 아저씨나 아는 오빠, 아버지 또는 친인척 등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접하는 사람들입니다.

2. 성폭력은 젊은 여성들에게만 일어난다?

20대의 젊고 날씬하고 예쁜 여성들만이 성폭력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 중 30%가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고, 20% 정도가 13~19세의 미성년자입니다. 또한 생후 만 4개월의 아기부터 70세 이상의 할머니까지 성폭력은 나이에 상관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신체적·사회적 약자인 남자 어린이, 남자 청소년 등 소수의 남성도 성폭력을 당합니다.

3. 여자들의 야한 옷차림이 강간을 유발한다?

노출이 심한 여름에 성폭력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절과

상관없이 성폭력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남성이 아무리 짧은 반바지와 소매 없는 옷을 입고 있다고 해도 성적인 대상이나 성폭력의 대상으로 보지 않으며, 아프리카에서는 가슴을 노출하거나 거의 옷을 벗고 다녀도 강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성들의 야한 옷차림이 강간을 유발한다는 것은 우리 문화가 만들어낸 통념입니다.

4. 성폭력은 억제할 수 없는 남성의 성충동 때문에 일어난다?

성폭력이 성충동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면 우발적인 사건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폭력은 지속적이고 계획적으로 일어납니다. 또한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음식을 훔쳐먹지 않는 것처럼 성충동도 교육과 훈련에 의해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해자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가해자가 자신의 억제된 분노 등을 왜곡된 성인식이나 여성관에 의해 자신보다 약자인 여성이나 어린이에게 표출하는 것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5. 여자들은 강간당하기를 바란다?

성폭력 가해자들은 피해자인 여성이 강간당하기를 원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소한 성희롱이나 성추행에도 피해여성들은 분노와 수치심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누구도 강간과 같은 폭력행위, 그로 인한 수치심과 모욕감을 원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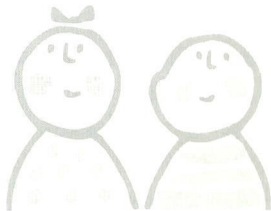
6. 끝까지 저항하면 강간은 불가능하다?

여성이 동의하지 않으면 신체구조상 강간은 불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강간은 많은 경우 말로 위협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때리거나 흉기로 위협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위협적인 상황에서 피해자인 여성은 극도의 공포와 수치심을 느껴 저항하기보다는 무력해지기 쉽습니다. 이는 여성의 신체적인 저항을 어렵게 만들어 강간을 피할 수 없게 합니다.

7. 강간범은 정신이상자다?

강간범은 흔히 정신병자라거나 정상이 아닌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다수 가해자들은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여성에 대한 비하의식과 잘못된 성인식을 지니고 있으며, 자신이 겪는 소외감, 열등의식, 박탈감, 분노 등을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어린이에게 표출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통념이나 더 많은 성폭력 정보, 성문화에 관한 글들을 보려면 본 상담소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www.sisters.or.kr를 참고하세요



성폭력에는 이런 유형들이 있습니다

어린이 성폭력

어린이 성폭력이란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가해지는 성폭력으로 '아동 성학대(child sexual abuse)'라는 전문용어로도 사용됩니다.

어린이 성폭력의 약 80%는 아는 사람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친부, 의부, 삼촌, 이모부, 할아버지 등 혈족 혹은 인척에 의해 일어나는 것으로, 이를 친족 성폭력이라고 합니다. 다른 유형은 교사, 유치원 원장, 통학버스 기사, 동네사람, 경비 등 어린이가 일상생활에서 접촉하기 쉬운 사람에 의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린이는 자신이 당한 피해가 성폭력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거나 가해자가 성폭력 사실을 비밀로 하라고 유인하거나 협박하기 때문에 피해 사실이 금방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어린이가 공포심을 갖거나 혼자 자기를 두려워한다거나 소변볼 때 동통을 느끼는 등의 행동이 나타나면 주의 깊게 관찰하고 성폭력 피해를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대처합니다

자녀가 성폭력당한 사실을 발견한 부모들은 매우 놀라고 당황해서 아이를 다그치거나 아이에게 화를 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감정을 아이에게 나타내는 것은 오히려 피해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사실을 발견하더라도 차분하게 아이에게 피해상황을 물어보고, 더 이상의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안심시켜 주십시오. 또한 어린이와 같이 시간을 보내거나, 무서워하지 않도록 세심한 보호로 심리적인 안정을 얻도록 해야 합니다.

 본 상담소에는 부모와 교사를 위한 어린이 성폭력 예방 지침서(「안전하게 자라는 우리 아이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아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예방교육 비디오 「내 몸은 내가 지켜요 II」가 있습니다.

청소년 성폭력

청소년 성폭력은 만 13세 이상 19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발생하는 성폭력을 의미합니다. 청소년 성폭력은 1996년 동네사람들 14명에 의한 13세 소녀가장의 성폭력 피해로 인한 자살시도, 중3 여학생의 성폭력에 의한 임신과 교실에서의 출산, 중학교 교장의 여학생들 성추행 등 사회적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사건들이 심각하게 보도되면서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청소년 성폭력의 경우에는 어린이나 성인 피해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윤간, 강도강간 등 특수강간의 비율이 높고 남성 피해자도 상당수 있습니다. 이는 불량배, 학교 폭력배 등이 집단 폭행, 강도, 흉기사용, 침입 등의 방법으로 폭행을 행하는데 청소년이 표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연령층과 비교하여 친족 내의 피해, 선배나 동급생에 의한 피해, 교사나 강사 등에 의한 성폭력의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어린이 성폭력은 폭력사용 여부, 저항 여부,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행위로 취급되어 엄하게 처벌을 받지만, 청소년 성폭력은 때때로 동의된 성관계로 오인받기도 합니다. 이는 요즈음의 청소년들이 성에 대하여 꽤 개방적이고 자발적이라고 보여지고, 어느 정도 판단능력과 방어능력이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방합니다

청소년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성폭력과 성관계의 구분을 명확히 할 수 있고, 자신의 성적인 행동범위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고 행동할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성교육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성문제를 충분히 터놓고 고민할 수 있는 상담창구와 상담원들이 필요합니다.

☎ 「5개 대상별(미취학~고등학교) 성교육 프로그램 및 성교육 그림자료집(2001)」과 「성교육·성상담 교사 연수 자료집」 등 청소년 관련 자료집들이 나와 있습니다.

☎ 청소년용 성폭력예방 비디오 「너 무슨 생각하고 있니」를 토론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트 성폭력

데이트 성폭력이란 '이성간의 데이트 중에 상대방으로부터 강요나 조종에 의해 일어나는 성폭력'으로서 상대의 동의 없이 일어나는 성행위를 의미합니다. 데이트 상대에 의해서 일어나는 성폭력은 284건으로 전체 상담의 9.6%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강간입니다.

데이트 중인 남녀간에 일어나는 데이트 강간은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 당사자도 이것을 성폭력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다만 윤리적인 잘못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데이트 강간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도 드물지만, 간혹 법정까지 가는 경우에도 가해자가 동의된 성관계를 주장하면서 무고죄나 명예훼손죄로 맞고소하여 오히려 피해자가 패소할 우려조차 있습니다.

이렇게 예방합니다

데이트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본인의 의사표현을 분명히 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고, 자신의 성에 대한 가치관과 한계행동의 범위를 분명히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남성은 여성의 의사표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내 성폭력

직장내 성폭력이란 '채용과정이나 근무기간에 직장상사·동료·계열사 혹은 거래처 직원들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는 성적인 언어나 행위'입니다. 직장내 성폭력은 전체 성폭력 중 596건으로 20.2%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해자는 직장상사나 동료, 고객이나 거래처 직원 등입니다. 성적인 폭언이나 가벼운 신체접촉은 직장 내에서 너무나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성폭력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직장내 성폭력의 피해자는 모욕감이나 수치심 또는 위협을 느끼는 데 그치지 않고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정신장애나 두통, 근육통, 위장장애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한 직장내 성폭력은 노동조건의 악화, 노동의욕의 상실, 인간관계의 훼손 등 업무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피해 당사자 외에 함께 일하는 사람, 나아가 직장 전반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렇게 대처합시다

직장내 성폭력의 경우 가해자가 상습적으로 여직원을 괴롭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는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알아보고 공동 대응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직원노조나 여직원회 등과 논의하여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는 직장내 성폭력 발생의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상담창구 등을 개설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성폭력을 빌미로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직업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노동부와 여성부에서는 직장내성희롱 피해에 관한 시정신청 접수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여성부

▶ 남녀차별신고센터

TEL : 1544-9995 Fax : 02-2106-5277 www.moge.go.kr

· 노동부

▶ 고용평등상담실

Tel : 1544-5050 www.molab.go.kr

 직장내 성폭력 예방 지침서 「새로운 직장문화를 만드는 사람들」과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를 위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가이드」가 발간되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오랫동안 커다란 충격과 혼란을 겪다가 점차 성폭력 피해를 수용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아래의 단계를 거쳐 회복에 이르게 됩니다. 이 단계들은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반복해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1. **충격/혼란의 단계**에서 피해자는 성폭력의 충격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합니다.

- 1) 불신 : “나는 아무도 믿지 못해.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어.”
- 2) 양가감정 : “이 일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만 입다물고 있으면 돼.”, “아니야, 나는 이제 끝장이야.”
- 3) 무력감 : “내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경찰, 법원, 병원에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이 단계는 연장됩니다.)

2. **부정단계**에서 피해자는 “나는 강간당한 적 없어.”, “꿈에 불과해.” 등으로 자신의 성폭력 피해를 부정합니다.

3. **우울/죄책감의 단계**에서 피해자는 수치스러워하거나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자신에게 잘못된 분노 감정을 표출시키거나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 1) 수치심 : “정말 창피해, 난 어떡하면 좋아.”
- 2) 자기 비난 : “내가 자초한 일이야.”
- 3) 잘못된 분노표출 : “그 일을 예방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었는데.”,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4) 절망 : "미처버리겠어.", "이젠 끝이야.."

4. 공포/불안감의 단계에서 피해자는 앞으로 건강하게 살지 못할까봐 불안해하며 악몽을 꾸기도 합니다. 또한 자신이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여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 1) 불안 : "내가 강간당했다고 다른 사람들이 흉보고 수군거리면 어떡하지?", "내가 다시 건전한 성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 "내가 다시 성생활을 즐길 수 있을까?"
- 2) 악몽 :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자면서도 자꾸 악몽을 꾸면서 불안해합니다.
- 3) 약점 : 자신은 이미 더러워진 존재이며 순결하지 않아 약점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5. 분노의 단계에서는 가해자뿐만 아니라 때론 자기자신, 전문가, 주변 사람에게 분노합니다.

- 1) 자기자신에 대한 분노 : "화가 치밀어, 왜 하필 나란 말이야.", "왜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두었을까?"
- 2) 전문가에 대한 분노 : "도대체 나를 진정으로 도와주는 전문가는 왜 한 명도 없는 거야." (경찰, 법원, 변호사, 상담원 등)
- 3) 가해자에 대한 분노 : "그런 사람은 죽어야만 해."
- 4) 남성이나 사회에 대한 분노 : "이 세상 남자는 다 그래. 믿을 수 있는 남자는 아무도 없어"
- 5) 주변사람에 대한 분노 : "자기 일이 아니라고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

6. 마지막 단계는 자신을 재수용하는 단계로 자신의 성폭력 피해 경험을 재조명하는 시간입니다.

- 1) 성폭력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 2) 자기 삶은 자신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으므로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 3) 성폭력을 당했지만 여전히 자신은 소중한 존재라는 점을 인정하게 됩니다.
- 4) 자신이 성폭력 피해자였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 5) 분노를 수용하게 됩니다.
- 6) 자기자신에게로 향했던 분노를 다른 방향이나 다른 방법으로 표출하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운동, 남을 지원하는 방향)
- 7)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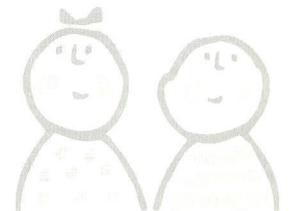


성폭력 피해자 이렇게 도와주세요

심리적 지원

1. 피해자에게 치유가 가능하다는 확신을 갖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2. 피해자의 커다란 고통에 동참하여 함께할 마음의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3. 피해 경험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열심히 경청해 주고 피해자의 말을 존중하고 수용해 주어야 합니다.
4. 성폭력 피해에 대한 자신의 반응이나 감정을 검토하면서 성에 대한 가치관과 입장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 특히 성이나 성폭력에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피해자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남녀 불평등한 성규범(가령, 순결 이데올로기)이나 편파적인 종교적 신념(가령, 가해자를 무조건 용서하라거나 낙태에 대해 무조건 죄악시하는 등)을 가지고 있을 때는 피해자를 더욱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5. 피해자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십시오. 고통을 딛고 살아온 용기 있는 태도를 격려하십시오. 긍정적으로 주장할 수 있고 자기를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피해자가 가진 장점을 격려하고 단점을 인식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시오.
6. 피해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적절하게 지원해야 합니다.
→ 의료적 · 법률적 조치, 은신처 제공, 전문적인 상담 등을 받도록 권유해 주십시오.
7. 피해 경험을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찾아보고 그 상황을 하나씩 검토하십시오. 또한 그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결과와 위험성을 예측하도록 하여 피해자 스스로 최선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8. 피해자가 이야기하는 성폭력 경험을 그대로 믿어주십시오.
9. 피해자에게 그 상황을 유발했거나, 부주의했거나, 저항하지 않았거나, 선물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책임이라고 비난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말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10. 사소하다고 여겨지는 성폭력일지라도 모든 성폭력은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11. 가해자를 이해해야 한다는 식의 말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12. 성폭력 치유는 서서히 조금씩 이루어지므로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13. 피해자는 후유증을 극복하여 건강하고 새롭게 삶을 향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이런 사실을 깨닫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14. 피해자가 분노나 고통, 공포를 느끼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시오.
15. 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피해자에게 위로하고 싶다는 심정을 전달해야 합니다.
16. 피해자는 수치심과 죄의식을 느끼고 있으며 인간관계나 자아개념에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신분 노출을 꺼리고 비밀 보장을 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의료적 지원

1. 성폭력 피해를 당한 후 즉시 진찰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성폭력 피해로 몸에 상처가 날 수 있습니다. 성병이나 성기 주변의 상처를 치료해야 합니다. 또한 임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단 병원에 다녀오면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중요한 증거자료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2. 병원은 언제 가야 합니까?
→ 빨리 갈수록 좋습니다. 특히 강간 피해의 경우 정자가 몸 속에서 살아 있는 시간이 48시간입니다. 그 외 다른 상처도 시간이 지나면 악화되거나 아물 수 있으므로 빠른 시간 내에 가야합니다.
3.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 절대 몸을 씻지 마십시오. 샤워 등으로 증거물이 씻겨서 소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은 옷 그대로 가야 합니다. 옷 등에 묻은 다른 증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어떤 검사를 실시합니까?
→ 전문상담소와 연계된 병원이라면 먼저 의사에게 성폭력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여 심리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몸에 난 상처를 살펴봅니다. 손톱 밑을 검사하여 혹시 가해자의 혈액이나 이물질 등을 확인합니다. 외성기와 내성기를 검진합니다. 증거 확보나 진료를 위한 것입니다. 또 혈액 채취를 합니다. 소변검사와 임신 여부 검사도 합니다.
5. 원치 않는데도 여러 증거를 수집합니까?
→ 증거채취와 검진을 할 때는 피해 당사자나 가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본 상담소에서 발간한 「성폭력에 관한 의료지침서」에는 보다 상세한 의료지원 정보가 있습니다.

법률적 지원

1. 성폭력을 처벌하는 법은 무엇입니까?
→ 형법 제22장 '성폭속에 관한 죄', 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에 관한 죄' 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있습니다. 또한 2000년에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이 제정되어 청소년 대상의 성폭력인 경우 더욱 높은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고, 같은 해 '아동복지법' 에도 아동에 대한 성폭력 행위 금지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1999년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과 같은 해 제정된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에서는 직장내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을 규제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은 2003년 현재 가해자에 대한 형사적인 처벌은 되지 않으며 여성부나 노동부를 통한 해결 신청과 민사소송 등이 가능합니다)
2. 고소는 무엇인가요?
→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검찰, 경찰 등)에 범죄사실을 알리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3. 고소는 어떻게 합니까?
→ 고소장을 작성하여 범죄 발생지 또는 가해자나 피해자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나 검찰에 제출하면 됩니다. 고소장은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6하원칙에 따라 범죄사실과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충분합니다.
4. 고소를 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 고소를 결정하는 사람은 피해자 본인입니다. 당장 고소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멸될 우려가 있는 증거는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5. 고소하면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됩니까?
→ 수사과정이나 법정진술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증언하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이때 가해자와 대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불충분하면 기소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사나 재판기간이 길어져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고소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은 가해자가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피해자를 고소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통해 가해자를 처벌하면 가해자의 재범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 당사자도 심리적인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6. 무엇이 성폭력으로 분류되고 법적으로 처벌되나요?

→ '강간'이 있습니다.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제압하고 간음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부녀자만이 강간의 피해자가 됩니다. 성기가 아닌 다른 이물질의 질내 삽입, 성전환 수술을 받은 남성에 대한 강간, 또는 강제적인 항문성교는 강간에 해당되지 않고 강제추행으로 분류되어 처벌됩니다.

'성추행'이 있습니다. 성추행은 성욕의 자극, 흥분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강제추행은 이때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강제력이 사용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간음'은 남성의 성기를 여성의 성기에 삽입하는 행위로 규정되는데 간음은 폭행 또는 협박이 사용되지 않는 것이어서 법적 규제를 받지 않지만 특수한 경우, 즉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및 업무상 위계, 위력을 사용하는 간음 그리고 법률에 의해 구금된 부녀자를 간음하는 경우는 처벌됩니다.

'성희롱'은 직장내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경우에 한해서 여성부나 노동부를 통한 해결 신청과 민사소송 등이 가능하며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할 수 없습니다.

7. 고소인에게는 어떤 권리가 부여되나요?

→ 수사나 재판과정시 편안한 환경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부모나 상담원, 변호사 등)이 동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인으로서 법원에 출석할 것을 요구받은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은 사생활 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고소는 누가 할 수 있나요?

→ 성폭력은 친고죄와 비친고죄로 나누어집니다. 친고죄(피해 사실을 당사자가 직접 고소할 때 비로소 수사가 진행되는 죄)일 경우

피해자와 그의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단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라도 책임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있다는 판정이 난다면 본인이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비친고죄일 경우(친족성폭력, 치상, 치사, 강도, 미성년자, 장애인)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누구라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9. 고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 가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고소를 취소할 경우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해야 하며 그 이후의 취소는 형량에 영향을 주지만 할 뿐입니다. 친고죄의 경우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비친고죄의 경우 피해 이후 10년 이내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비친고죄의 경우는 죄명에 따라 공소시효가 3년부터 15년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관계법령을 꼭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강간 치상 또는 강제추행치상의 경우는 공소시효가 10년이며, 친족에 의한 강간이나 강제추행은 7년,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이나 강제추행도 7년입니다.

10.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까?

→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11. 그렇다면 민사소송은 언제 할 수 있나요?

→ 민사소송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하면 됩니다.

12. 합의는 언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 선고가 나기 이전이라면 언제라도 가능합니다. 가해자에게 요구할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고 자필서명 또는 날인을 한 후 공증을 받아둡니다.

13. 항고와 항소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 검찰에서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지 않을 경우(즉 불기소처분) 1개월 이내에 항고할 수 있고, 재항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1심 판결에 불복할 시 1주일 이내에 해당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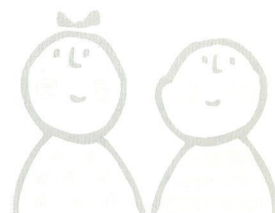
본 상담소에서 발간한 「성폭력에 관한 법률지침서」에는 보다 상세한 법률 정보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방합시다

- 평소 자기 주장을 분명히 하는 태도를 갖도록 한다.
- 규칙적인 운동과 체력단련을 통해 힘과 자신감을 기른다.
- 성에 대한 가치관, 행동범위의 한계에 대해 분명한 결정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예”와 “아니오”가 뒤섞인 태도를 보이지 말고, 의사표현을 분명히 한다.
- 불쾌한 성적인 접촉이나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분명한 거부의사를 표시한다.
- 평소 성폭력에 대한 충분한 예비지식과 대처방법을 숙지한다.
- 음담패설을 삼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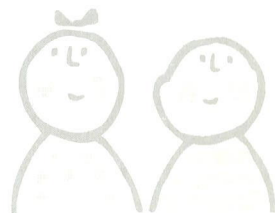
- 자신이 가는 곳을 주변에 명확히 알린다.
- 숙박업소는 어떤 구실로든 따라가지 않는 것이 좋다. 부득이한 경우 구조요청을 할 수 있는지, 비상구가 있는지 살펴둔다.
- 평소 자신의 주량을 파악하고, 술은 자신이 조절가능한 만큼 마신다.
- 어디서든 혼자 택시를 타고 집에 올 수 있도록 비상금을 소지하고, 콜택시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다닌다.
- 택시를 탈 경우는 차번호와 회사명을 알아둔다.



이런 사람은 조심하세요

- ❶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
- ❷ 쌍스런 욕과 과격한 행동을 자주 하는 사람. 여성에 대한 부정적 발언을 자주하며, 천한 말을 사용하며, 통명스럽게 말하는 사람.
- ❸ “건장한 사나이(터프가이)”처럼 행동하며 용맹스러움을 과장되게 설명하고 표현하는 사람.
- ❹ 화를 잘 내며, 폭력(때린다든지, 팔을 붙잡는 행위 등)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
- ❺ 여성을 지나치게 소유하려 하고 질투심이 강한 사람.
- ❻ 공공장소에서 몸을 지나치게 밀착시키고, 손을 허벅지 위에 얹는 등 성적인 행동을 유도하는 사람.
- ❼ 여성이 원하는 것을 무시하는 사람.
- ❽ 여성을 정숙한 여성과 성적인 여성으로 이분화하여 여성의 순결함이나 고결함을 강조하는 반면, 그렇지 않게 보이는 여성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

- ❶ 여성이 “싫어요”라고 말하면 더 공격적이고 적대적으로 행동하는 사람.
- ❷ 모임이나 술자리에서 아주 친근하게 행동하며, 다른 친구들로부터 여성을 떼어놓으려고 애쓰는 사람.
- ❸ 처음 만나서 단 둘이 있기만을 고집하는 사람.
- ❹ 부적절 상황(예배시간, 수업시간 등)에서 여성의 관심과 순종을 요구하는 사람.
- ❺ 사적인 질문을 자주 하며 여성이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기 원하는 사람.
- ❻ 남자는 여자의 하늘이고 반드시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해야 하는 식으로 전통적인 여성상과 남성상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 안내

상담전화 : 02-338-5801~2

전화상담, 서신상담, 면접상담, 인터넷 상담

모든 성폭력 피해에 관해 심리, 의료, 법률 분야의 전문상담을 실시합니다. 상담은 일차적으로 전화상담을 통해 이루어진 후 언제든지 면접상담이 가능합니다. 먼 거리나 서류를 송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편지나 FAX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월~토 오전 10시~오후 10시(일, 공휴일 제외)

온라인 상담

홈페이지 www.sisters.or.kr에서 성폭력 및 성문화 전반과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합니다.

홈페이지 상담게시판에서 상담하실 수 있고 ksvrc@chol.net으로 메일을 보내어 비공개로 상담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토요법률상담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무료 법률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고소하기 전 법적 검토와 효율적인 대응 방향에 대하여 자문을 해 주고 고소과정과 재판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지원합니다.

법정지원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은 내담자의 요청에 따라 법정동행, 비공개신청, 재판과정 모니터, 진정서 송부, 사안에 따라서는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지원합니다.

열린터 상담

열린터는 지속적인 피해를 피하기 위해 가해자와 거처를 분리해야 하거나 집중상담을 필요로 하는 성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피난처입니다. 안전하게 머무르면서 법적 절차를 진행시키거나 성폭력 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개별상담, 집단상담 등 다양한 치유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자료지원

본 상담소가 제작한 각종 피해유형별 예방지침서, 의료지침서, 법률지침서 등과 자료집, 예방 비디오 등을 성폭력 피해자와 주변인들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